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 - 391

제출연월일 : 2002. 4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 휴무제 도입) 하고

○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(연가수혜범위 확대)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)

나.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게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(아래산출방식)토록 함(안 제20조).

$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다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 제목 “토요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”를 “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”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“토요일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중 “결근일수, 휴직일수”를 “결근일수”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르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

$$\text{○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중 “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”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“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① 주민 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	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①----------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----------.
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--------.
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①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	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①결근일수-----------.
<신 설>	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

현 행	개 정 안
	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 ○휴직자의 연가일수 = 12월-당해년도휴직기간(월) 12월 × 당해년도 연가일수
② (생략) ③ (생략) 제22조(공가) (생략) 1~4 (생략) 5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~8 (생략)	③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22조(공가 (현행과 같음) 1~4 (현행과 같음) 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~8(현행과 같음)